

# 화재안전자재관련 건축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 □ 건축법 개정안 주요내용

- 1) 품질관리서
  - 복합자재를 포함한 마감재료, 방화문 등 건축자재의 제조자, 유통자, 시공자, 감리자는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2) 성능시험
  -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
- 3) 정보제공
  -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의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
- 4) 정보게시
  -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일반인이 알 수 있게 홈페이지 등에 게시

##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1) 품질관리서\* 작성 자재 확대 :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 \* 품질관리서 :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 (현행) 복합자재
  - (개정) 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 2)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되어 위·변조 여부 손쉽게 확인 가능
  - \* 협회에서 운영하는 건축자재 정보센터를 통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 확인 가능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단체에서 건축자재 품질관리 정보 공개
- 3) 단열재 표면에 자재성능정보\*를 표시하여 시공 현장에서 손쉽게 성능 확인 가능
  - \* 단열재 성능정보 : 제조업자명, 제품명, 화재성능, 밀도, 로트번호 순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해당하는 단열재는 자재 표면에 정보를 표시

##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제14항제1항 관련)

도서의 종류	<현행>	<개정안>
	표시하여야 할 사항	표시하여야 할 사항
실내재료마감표	<신설>	외벽 마감재료 및 외단열재
각층 및 지붕평면도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방화구획(방화문,자동방화셔터,내화충전구조,방화댐퍼를 포함한다) 계획
입면도	주요 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 외부마감재료	주요 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 외벽 마감재료

단면도	<신 설>	방화구획(방화문,자동방화셔터,내화충전구조,방화댐퍼를 포함한다) 계획
방화구획 상세도	<신 설>	방화문,자동방화셔터,내화충전구조,방화댐퍼 설치부분 상세도
외벽마감 단면상세도	<신 설>	외벽 및 외벽에 설치되는 단열재, 마감재료의 종류(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한함)
비 고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하려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하려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 및 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설계도서로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1) 소규모 공장에 사용되는 복합자재 도금 종류 다양화 등

- 소규모 공장에 설치되는 복합자재의 강판 도금 종류를 다양화하고 노후화에 따른 난연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부착량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 2)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첨부 서류 명확화 및 서식 마련

- 품질관리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고 세분화하여 서식을 마련함

### 3)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시험성적서 사본 등 건축자재의 성능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성능시험기관 및 시험의뢰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등을 정하는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 4) 성능정보 자재표면 표기 대상 단열재 구체화

- 단열재의 범위를 난연성을 갖춰야 하는 단열재로 구체화

### 5) 지붕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마련

- 지붕에 대한 내화성능을 정하고, 용도구분을 현행 건축물 용도 체계에 적합

## □ 화재안전건축자재 관련 기준 행정예고 주요내용 (행정예고 기간 : 2019.09.23. ~2019.10.14.)

### 1)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단열재 표면 성능정보 표기를 위한 기준 마련(안 제8조)
  - 단열재 표면에 제조업자명, 제품명, 난연성능 등을 표기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함
- 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의 관리 및 공개 기관 지정(안 제9조)
  -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정보의 관리 및 공개기관으로 지정

### 2)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지붕의 성능기준 마련(안 제3조)
  -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지붕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반영
- 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의 관리 및 공개 기관 지정(안 제24조)
  -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를 내화구조 성능 정보의 관리 및 공개기관으로 지정

### 3)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의 관리 및 공개 기관 지정(안 제9조)
  -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를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 성능 정보의 관리 및 공개기관으로 지정

건축법 [법률 제15992호, 2018. 12. 18., 일부개정]	건축법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p>제52조의3(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u>① 건축물에 제52조에 따른 마감재</u>  <u>료 중 복합자재[불연성 재료인 양면</u>  <u>철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u>  <u>성이 아닌 재료인 심재(心材)로 구</u>  <u>성된 것을 말한다]를 공급하는 자</u>  <u>(이하 “공급업자”라 한다), 공사시공</u>  <u>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u>  <u>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복합자재</u>  <u>품질관리서(이하 “복합자재품질관리</u>  <u>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u>  <u>한다.</u></p> <p><u>②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건축물에 사용하는 복합자재에 대하</u>  <u>여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과학기술</u>  <u>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u>  <u>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u>  <u>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難燃)성</u>  <u>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u>  <u>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u></p> <p><u>③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u>  <u>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u>  <u>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u>  <u>한다.</u></p>	<p>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u>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u>  <u>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u>  <u>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u>  <u>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u></p> <p><u>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u>  <u>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u>  <u>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u>  <u>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u>  <u>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u>  <u>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u>  <u>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u>  <u>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u>  <u>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u>  <u>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u>  <u>있다.</u></p> <p><u>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u>  <u>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을</u>  <u>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lt;신 설&gt;</p>	<p>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p> <p>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p>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 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45호, 2019. 10. 22., 일부개정]
<p>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u>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 5. (생략)</p> <p>② <u>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u></p>	<p>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 - <u>제50조제1항 본문</u> -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u>그러지 않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u>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u></p>
<p>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u>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u></p>	<p>제61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① <u>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u></p>

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건축관계자에 대한 조치 가.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나. 해당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 ②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같은 항 제1호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제1호가목의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만 해당한다)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p>제61조의4(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이하 “복합자재”라 한다)를 공급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이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는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와 공급받은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1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① 법 제5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p>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그 밖에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p> <p>②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위법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p>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63조(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법 제52조의4제2항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서 건축 관련 품질시험의 수행능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u>제52조의3</u> 및 <u>제53조</u>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② (생략)</p> <p>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자재의 <u>철판과 심재(心材)</u>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p> <p>1. <u>철판</u>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u>횡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u></p>	<p>제1조(목적) ----- ----- ----- <u>제52조의4</u>, <u>제53조</u> 및 <u>제64조</u>----- ----- -----.</p> <p>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강판</u>----- ----- ----- -----.</p> <p>1. <u>강판</u>: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p> <p>가. <u>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일 것[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u></p> <p>나. <u>앞면 도장 횡수: 2회 이상일 것</u></p> <p>다. <u>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u></p>

나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산업표준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  
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  
g/m<sup>2</sup> 이상일 것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  
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  
g/m<sup>2</sup> 이상일 것

3) 용융 55% 알루미늄 아  
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m<sup>2</sup> 이상일 것

4) 용융 55% 알루미늄 아  
연 합금 도금 강판: 90g/m<sup>2</sup>  
이상일 것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기준에 적합할 것

## 2. (생 략)

### 제24조의3(복합자재의 품질관리)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품질관리서는 별지 제  
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품질  
관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난연등급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사본

## 2. (현행과 같음)

###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① 영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  
축자재”란 영 제46조 및 이 규  
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자동방화셔터, 내화충  
전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  
댐퍼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

2. 강판의 두께 및 아연도금량이 표시된 강판 시험성적서 사본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한다.

1. 영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 자재 시험성적서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 증명서 사본

2. 영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난연 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3. 영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차열 성능 및 비차열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비차열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구조

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차열성능 및 차염성능이  
표시된 내화충전구조 시험성  
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  
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  
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  
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  
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③ 공사시공자는 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  
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제7호서  
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  
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영 제62조제3항  
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을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  
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의4(건축자재 품질관리 정보 공개) ① 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받은 시험기관의 장(이하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건축자재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성능시험을 의뢰한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의 장은 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시험성적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한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가 건축물에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의뢰한 경우

2. 법에서 정하는 성능에 미달하여 건축물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건축자재의 종류, 용도, 색상, 재질 및 규격을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52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 성적서의 사본

2.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건축 자재의 종류, 용도, 색상, 재질 및 규격

⑤ 기관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해당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⑥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시험성적서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⑦ 기관 또는 단체는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제24조의5(건축자재 표면에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단열재) 법 제52조의4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란 영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열재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제8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① 단열재 제조·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단열재의 성능과 관련된 정보를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단열재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조업자 : 한글 또는 영문</li> <li>2. 제품명, 단 제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단열재의 종류</li> <li>3. 밀도 : 단위 K</li> <li>4. 난연성능 : 불연, 준불연, 난연</li> <li>5. 로트번호 : 생산일자 등 포함</li> </ol> <p>② 제1항의 정보는 시공현장에 공급하는 단위별로 표기하되, 단열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표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표기하는 글자의 크기는 2.5cm 이상이어야 한다.</p> <p>③ 단열재의 성능정보는 반영구적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인쇄, 등사, 낙인, 날인의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한다.(라벨, 스티커, 꼬리표, 박음질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지워지거나, 떨어</p>

<p>&lt;신 설&gt;</p> <p>제8조 (생 략)</p>	<p>질 수 있는 표기방식은 제외한다.)</p> <p>제9조(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불연, 준불연, 난연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p>
-------------------------------------	---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u>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 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 (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u></p>	<p>제2조(불연재료) ----- -----.</p> <p>1. ----- ----- ----- ----- -----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 ----- ----- -----</p>

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  
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  
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  
상이어야 한다.

<신 설>

-----  
-----  
-----.

가.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을 것(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  
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  
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나.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  
량 감소율이 30% 이하일  
것

다. 시험 중 10초 이상의 화염  
발생이 없을 것

2. -----  
-----  
-----  
----- 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  
어 실험용 --.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  
합자재의 경우 강판의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  
0.50밀리미터 이상이고 전면  
도장 횟수는 2회 이상이어야  
하며, 도금의 종류에 따른 도  
금의 부착량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용융아연도금강판 : 한국  
산업표준 KS D 3506(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180g/  
m<sup>2</sup> 이상

나.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  
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  
준 KS D 3770(용융55%알  
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  
착량 90g/m<sup>2</sup> 이상

다. 용융55%알루미늄아연마  
그네슘 합금도금강판 : 한  
국산업표준 KS D 3033(용  
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  
슘 합금도금강판 및 강대)  
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  
g/m<sup>2</sup> 이상

라. 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  
합금도금강판 : 한국산  
업표준 KS D 3030(용융아  
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  
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m<sup>2</sup> 이  
상

제3조(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준불연재료) -----  
-----.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text{MJ}/\text{m}^2$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text{kW}/\text{m}^2$ 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  
-----  
-----  
----- 결과, 제  
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  
두 만족하여야 -----  
-----  
-----  
-----  
-----  
-----  
-----  
-----  
-----  
-----  
-----

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text{MJ}/\text{m}^2$  이하일 것

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text{kW}/\text{m}^2$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이면에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 분 이상이어야 한다.

<신 설>

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완전히 녹아서 바닥면만 남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면 아니되며, 일부 용융 및 수축되어서도 아니된다.

2. ----- 제5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의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 0.50밀리미터 이상이고 전면 도장 횟수는 2회 이상이어야 하며, 도금의 종류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용융아연도금강판 : 한국 산업표준 KS 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180g/m<sup>2</sup> 이상

나.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770(용융55%알





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 0-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m<sup>2</sup>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 kW/m<sup>2</sup>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  
-----  
-----.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 0-1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 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m<sup>2</sup> 이하일 것

나.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m<sup>2</sup>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이면에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완전히 녹아서 바닥면만 남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면 아니되며, 일부 용융 및 수축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철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철판은 도장용 용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 서 전면도장의 횡수는 2회 이상, 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그램 이상이고, 철판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을 기준으로 0.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되어서도 아니된다.

2. -----  
----- 제5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  
에 있어 실험용 -----  
-----.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의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 0.50밀리미터 이상이고 전면도장 횡수는 2회 이상이어야 하며, 도금의 종류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용융아연도금강판 : 한국 산업표준 KS 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180g/m<sup>2</sup> 이상

나.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770(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m<sup>2</sup> 이상

다. 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 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033(용

용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 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 g/m<sup>2</sup> 이상

라. 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030(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m<sup>2</sup> 이상

제5조(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 KS F ISO 1182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후단 신설>

2. 시험은 시험체에 대하여 총 3회 실시하여야 한다.

3. 복합소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제5조(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① -----  
-----  
-----  
-----.

1. -----  
----- 되어야 하며, 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샘플에서 채취하여야 --. 또한, 시험체는 방화상 불리한 면을 아래로 하여 제작한다.

2. 시험체는 총 3개이며, 각각의 -- 1회씩 총 3회의 시험을 --  
-----.

3. 시험체는 원기둥 모양으로 하여야 하며, 각각의 시험체의

하지 않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 산업규격 KS F ISO 5660-1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부피는  $(78 \pm 8) \text{ cm}^3$ , 지름 45mm와 높이  $(50 \pm 3) \text{ mm}$ 여야 한다. 다만, 재료의 높이가  $(50 \pm 3) \text{ mm}$ 가 되지 않으면, 재료를 여러층으로 겹쳐서 사용하거나 또는 높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4.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액상 재료(도료, 접착제 등)인 경우에는 지름 45mm, 두께 0.5 mm 이하의 강판에 사용두께 만큼 도장 후 적층하여 높이  $(50 \pm 3) \text{ mm}$ 가 되도록 시험체를 제작하여야 하며 상세 사항을 제품명에 포함하도록 한다.

6. 시험체 및 액상 재료의 도장용 강판의 지름 오차 범위는 -2mm로 한다

② -----  
-----  
-----  
-----.

1. -----  
----- 되어야 하며, 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



3. 4. (생 략)

③ (생 략)

제6조(시험성적서) ① 시험기관은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재질, 주요성분 및 시험체 가열면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③ 성능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체 및 시험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높이 50mm 초과하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체는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면을 절단하여 시험체의 높이를 50mm로 조정하여야 한다.

다. 시험체의 가로와 세로 100mm를 포함한 두께 50mm의 오차 범위는 -2mm로 한다.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시험성적서) ① 시험기관은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재질, 주요성분 및 시험체 가열면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겹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2]에 따른 서식에 따라 발급되어야 한다. 단, 각 호의 사항 중 시험대상품, 시험규격, 시험결과, 유효기간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신청자 : 회사명, 주소, 접수

1.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  
한 품질검사전문기관
2. 한국산업규격(KS A 17025)  
또는 ISO/IEC 17025에 적합  
한 것으로 인정받은 국내 공  
인시험기관

- 일자
2. 시험대상품 : 시료명, 모델명,  
제품번호
3. 시험규격 : 국토교통부 고시  
에 의한 시험임을 명기
4. 성적서 용도
5. 시험기간
6. 시험환경
7. 시험결과 : 불연, 준불연, 난  
연, 불합격에 해당하는지를 명  
기. 단, 이와 별도로 불연, 준  
불연, 난연 등 시험결과는 기  
울기 315(45), HY 견명조, 사  
이즈 22, 회색투명도 50%로  
[별표2]에 따라 표시
8.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 확인  
을 위한 QR 코드, 문서 위변  
조 방지 장치, 진위 확인을 위  
한 홈페이지 주소
- ③ 이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을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1. 제품의 주요성분, 두께, 가열  
면 등이 표기된 구성도
  2. 재질 및 규격, 제조사 모델명  
등이 포함된 제품의 구성 목  
록
  3. 시험체의 밀도(샌드위치패널

의 경우 심재의 밀도를 측정)

④ 이 기준에 따라 발급된 시험 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⑤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체 및 시험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별표2]

##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 표준서식 [제6조 관련]

<h3>시험성적서</h3>			
<b>1 신청자</b>	기술기 315(45) HY건명조 사이즈22 회색 투명도50%		
○ 회사명 :	의뢰자		
○ 주 소 :	의뢰자 주소		
○ 접수일자 :	0000.00.00		
<b>2. 시험대상품</b>			
○ 시 료 명 :	제품명 (규격 표기)		
○ 모 델 명 :	모델명 (규격 표기)		
○ 제품번호 :			
<b>3 시험규격</b>	국도교통부 고시 제2018-771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규격 표기)		
<b>4 성적서 용도</b>	품질확인용		
<b>5 시험기간</b> :	0000.00.00 ~ 0000.00.00		
<b>6 시험환경</b> :			
<b>7 시험결과</b>	국도교통부 고시 제2018-771호 준불연재료 적합 (규격 표기)		
<b>확인</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tr><td style="width: 50%; padding: 5px;">시험실무자 성 명 : _____ (서명)</td><td style="width: 50%; padding: 5px;">기술책임자 성 명 : _____ (서명)</td></tr></table>	시험실무자 성 명 : _____ (서명)	기술책임자 성 명 : _____ (서명)
시험실무자 성 명 : _____ (서명)	기술책임자 성 명 : _____ (서명)		
발급일 : 0000.00.00			
<b>000000000연구원장 (인)</b>			
* 본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규격 표기)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에 따른 시험기관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③ ~ ⑤ (생략)

<신설>

제24조 (생략)

<삭제>

<삭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 (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 건축사법 제31  
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제21조의 성능을 확보한 내화충  
전구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  
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